



대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

THE GREATER NEW YORK BEAUTY SUPPLY DEALER'S ASSOCIATION

회칙 및 정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:명칭

뉴욕 뷰티 서플라이 협회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New York Beauty Suppliers Association, Inc 라 한다.

제 2 조:목적

- 1.회원간 친목을 통한 사업정보 교환
- 2.회원 상호간 공존 및 불이익에 대한 공동 대처
- 3.공동구매 및 매출증대 연구를 통한 경쟁력 강화
- 4.지역사회와 선의 선양을 통한 관계 개선 노력
- 5.교육 및 전문지식 제공, 회원의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

제 3 조:주소

협회의 주소는 뉴욕주에 둔다.

제 2 장 조직 및 집행기관

제 4 조:회원

협회의 회원자격은 뉴욕주내에 사업장을 두고 뷰티서플라이업에 종사하는 기업주로서 가입서를 작성후 입회비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소매업자로 한다.

제 5 조 : 회원의 임무

회원의 임무는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하며 회원은 매년 정해진 회비를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한다.

제 6 조:임원

협회의 임원은 회장 1 인, 부회장 5 인 이내, 사무총장 1 인, 총무 1 인, 재무 1 인, 홍보 1 인 으로 구성한다.

제 7 조 : 임원 선출

1. 회장은 회원 중 이사회출석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자로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선임한다.
2. 부회장은 각 지역을 안배하여 회장이 5 인 이내에서 임명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임명한다.
3. 모든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4.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8 조 : 임원의 임기

1.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2. 회장의 유고시 연령의 위계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차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로는사무총장, 총무, 재무순으로 그 직책을 대행한다.
3. 임원의 결원이 있을때는 회장이 임명할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9 조: 이사, 이사장 및 이사회

1. 이사는 매년 이사비를 납부한 자로 회장 및 이사장 선출에 참여하며 협회의 발전에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자이다.
2. 이사는 이사와 명예이사가 있으며 이사는 창립 발기위원 전원 이외에 각 지역의 규모를고려하여 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전체 회원의 1/3 이내로 한다.
3.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출석 과반수의 인준을 받은 자로서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4. 명예이사는 이사장과 회장의 합의에 의해 임명하며, 전체 이사 숫자의 1/5 이상은 넘지 못한다.
5. 이사회는 협회의 운영에 재정적 후원, 감사 및 회장을 자문하며 협회의 대외기관 기능을 가진다.
6. 이사회는 본회 임원 및 이사로 구성되며, 본협회 회장 후보를 3 인이내에서 총회에추천하고 감사를 선임한다.
7.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, 이사장 유고시회장이 대행한다.
8. 이사회는 성원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,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10 조 : 임원의 직무

1.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전체적인 회무를 총괄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및 각 부서 활동을 관장한다.
4. 총무는 사무총장의 제반 일을 보좌한다.
5. 재무는 회비, 기부금의 회계관리 및 장부정리와 예산, 결산의 재정을 담당한다.
6. 감사는 재무회계를 감사하며,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: 부서의 구성

협회의 주요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시 적절한 부서를 둘수 있다.

제 12 조 : 명예회장 및 고문

1. 명예회장 : 회장은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자문을 구할수 있다.

2. 고문: 회장 및 이사를 역임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수 있다. 또한 회장은 임원회의 만장일치가결에 의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능력과 인품을 갖춘자를 고문에 위촉할수 있다.

제 3 장 의결기관

제 13 조:총회

1.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정기총회는 매 1 년마다소집하고 9 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년 4 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회원 2/3 이상의 요청이있을때 이를 소집할수 있다.
3. 회장은 총회 개시 2 주전까지 일시, 장소 및 중요 안건을 전회원에게 서면, 혹은 주요 일간 신문, 방송을 통해 사전 통보 해야 한다.

제 14 조 : 임원회

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사업계획과 실적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임원회의 성원은 과반수의 출석,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5 조 : 총회의 구성

1. 총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2. 상정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6 조 : 총회의 기능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결정한다.

1. 회원의 권익을 위한 대책
2. 정, 부회장 선출 또는 인준
3. 회칙 제정, 수정 및 개폐 의결
4. 예산 및 결산 인준
5. 사업 계획 인준
6. 기타 제반 사항

제 17 조 : 총회의 의장

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수행하며 유고시 연령의 위계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한다.

제 4 장 재정 및 회계

제 18 조 : 재정

협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회비 : 연 \$200.00
- 2.기부금 및 찬조금

3.이사회비 : 연 \$100.00

4.기타

제 19 조:회계연도

협회의 회계 연도는 10 월 1 일부터 익년 9 월 30 일 까지로 한다.

제 5 장 벌칙

제 20 조 : 자격 상실

- 1.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 시켰다고 인정될때는 임원회에서 심사하고 총회 또는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재적회원 1/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찬성으로 자격이 상실 된다.
- 2.협회의 회원이 총회 및 임시총회에 2 회 이상 무단 불참시 출석 회원 2/3 이상결의로 자격이 상실될수 있다.
- 3.자격 상실된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납입된 회비는 환불받을수 없다.
- 4.협회 회원으로서 매년 3 월말 이내에 회비를 미납하면 자격이 상실된다.
- 5.자격 상실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복권을 결정한다.

제 21 조:회칙 개정

- 1.협회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회장 또는 회원 2/3 이상의 발의로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정관개정 위원회는 임원 2 인, 전직 회장단 2 인,이사 2 인으로 구성한다.

제 6 장 부칙

제 1 조: 관례

협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혹은 미국내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2 조 : 시행

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3 조: 정의

회칙에 언급된 뉴욕이라 함은 뉴욕주를 말하며,미용 뷰티 서플라이 소매업자라함은 1 개 사업장에 순수 뷰티 서플라이 품목(화학제품)이 1/2 이상 진열되어 있고 전체 매출의 1/2 이상이 소매 매출인 사업주를 말한다.

제 4 조 : 지역 구분

각 지역이라 함은 1.BRONX 와 UPSTATE 2.BROOKLYN 과 STATEN ISLAND
3.MANHATTAN 4.QUEENS 와 LONG ISLAND 의 4 개 지역을 뜻한다.의결권

제 5 조 : 불참 회원의 발언권

회원은 총회 불참시 집행부 임원에게 문자 및 SNS,서면위임에 의해서만 의결권이 성립된다.

